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신원철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365호

다. 제출일자 : 2016. 8. 16

라. 회부일자 : 2016. 8. 16

2. 제안사유

- 현행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2항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비상임이사의 영리목적 업무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여 공사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24 ~ 2016. 8.31

- 제출의견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에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직 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 의견

1) 비상임이사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1조1)에서는 공사의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²⁾ 전국적으로 반드시 일률적 규율의 취지가 아니라면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자문 결과³⁾ 지방공기업의 성격 및 직무 등에 따라

-
- 1)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2) 대법원 1997.04.25. 선고96추244판결
- 3) 입법담당관-2483(2016.7.19.)

공기업 운영 투명화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임이사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 조례 개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상임이사 겸직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 관련

- 현재 서울시 5대 공기업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3~6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들은 월 100만원의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시 30~5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특히, 최근에는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과 공정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5대 공기업 중에서 서울시 설공단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조례 개정으로 공사 운영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⁴⁾

4) 교통정책과-18808(2016.9.1.)